

인천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가단25993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23. 4. 28.

판결 선고 2023.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4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5.부터 2023.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469,3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서강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년 9월경 D을 이 사건 대리점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D은 그 무렵부터 자동차판매 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2. D의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D이 재직 중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D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원 및 재정보증서

위 사람(D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임을 보증합니다. 위 사람이 귀 대리점(이 사건 대리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재직하는 향후 2년 동안은 본인 등(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그 신원을 보증하며 만일 위 사람이 귀 대리점의 내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귀 대리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본인 등이 뒷면 신원보증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변상하고 그 신원 일체를 책임지겠습니다.

신원보증약관

제1조(신원보증계약)

이 약관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대리점(이하 회사라 함)의 직원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연대하여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인은 연대보증하여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 D은 2021년 9월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매수인인 E, F, G, H, I, J로부터 자동차 판매 선금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1,469,336원을 지급받은 다음 자동차를 출고하여 주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유용'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9. 3.부터 2021. 9. 14.까지 이 사건 금전유용에 따른 자동차 매수인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E, F, G, H, I, J에게 합계 141,469,33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이 사건 금전유용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이는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신원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 141,469,33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20,000,000원까지만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원보증책임의 제한

1)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은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원보증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위 조항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D의 모친으로서 별다른 경제적 이해관계나 반대급부 없이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정, 원고는 D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 행위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 D이 다수의 자동차 매수인들로부터 선급금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받아 유용하는 동안 그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신원보증책임은 D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30%인 42,440,800원(= 141,469,336원 × 30%,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원보증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42,44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8.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두영